

임직원 공정거래 가이드라인

1. 목적 및 적용범위

본 가이드는 임직원이 일상 업무에서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을 준수하도록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본 가이드는 전 임직원에게 적용하며, 협력사와의 대면·온라인·행사·회의 등 모든 접점 활동에 준용한다.

2. 기본 원칙

- 정직·투명·공정의 원칙 준수
- 반경쟁행위(담합·입찰방해·시장분할 등) 금지
-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및 협력사와의 상호 존중
- 민감정보(가격·원가·고객·생산량·마진 등) 교환 금지
- 모든 거래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필수 준수조항을 포함
- 위반 우려 상황 인지 시 즉시 중단·보고

3. 금지행위 및 주의사항(주요 사례 포함)

3.1 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

- 경쟁사와의 가격·할인율·마진·원가·생산량·고객리스트·판매전략 등 민감정보 교환 금지
- 협회/세미나/전시회 등에서의 묵시적 합의 유도 발언·제스처 금지
- 경쟁사로부터 민감정보 제공 시 즉시 대화 중단 및 회의록에 중단 이유 기록 후 보고

3.2 입찰·견적 관련

- 입찰 전·중·후에 경쟁사와 낙찰자·투찰가·물량배분 등 사전 조율 금지
- 입찰 관련 비공개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·수령 금지

3.3 협력사와의 공정거래

-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(부당 감액·반품 강요·구매단가 일방 인하 등)
- 기술자료 제공 강요 및 부당 사용 금지
- 대금/단가/납기 등 거래조건은 서면 계약에 명확히 기재

3.4 공동 마케팅·표준화 활동 시 유의

- 표준화·조인트 세일즈 추진 시 경쟁제한 효과가 없도록 사전 법무/준법 검토
- 대외 발표자료·앵커링 가격 시그널 등에 경쟁제한 요소 포함 금지

3.5 유통·판촉·리베이트

- 부당한 리베이트·판촉비 전가·강매·가격유지 행위 금지
- 판촉비/리베이트는 계약·정책에 근거하고 객관적 증빙 확보

4. 협회·회의·행사 참여 가이드

- 회의 안건 사전 검토(민감정보·가격·마진·고객 등 논의 금지 명시)
- 회의 중 민감 주제 발생 시 즉시 이의 제기 → 필요 시 퇴장 및 기록 남김
- 회의록 필수(참석자·시간·논의 요지), 보관 및 요청 시 제출
- 비공식 만남(식사·사담)도 동일 기준 적용

5. 거래·계약·커뮤니케이션 규칙

- 모든 거래는 서면 계약 원칙, 반부패·공정거래·위조부품 금지·정보보호·감사권 조항 포함
- 가격·조건 제안 시 독자적 판단과 합리적 근거(원가·시장·내부정책)에 기반
- 협력사 선정·평가·단가변경 시 객관적 기준·기록 유지
- 대외 커뮤니케이션(보도/블로그/설명회)은 사전 검토 후 진행
- 내부 승인 없이 경쟁 민감정보 대외 제공 금지

6. 의사결정·승인 및 기록관리

- 민감거래(선물·접대·여행 등)는 사전 승인 원칙 및 지출대장·증빙 첨부
- 입찰·협회·표준화 등 경쟁법 리스크 활동은 사전 검토(준법/법무) 후 진행
- 회의록·계약서·승인서·이메일 등 관련 기록 보관

7. 위반 예방·보고·보호

- 위반 징후 인지 시 즉시 중단·상급자 또는 준법/윤리경영 부서 보고
- 선의의 신고자 보호 및 보복 금지
- 고의 또는 중대한 위반 시 인사·징계와 거래 제한 가능

8. FAQ (현장 질문 예시)

Q1. 협회 세미나에서 경쟁사 담당자가 “최근 단가 상황 어떠냐”고 물으면?

A. 가격·원가·마진·생산량 등 민감정보는 일절 공유 금지. 질문을 거절하고 필요시 자리 이탈 후 사유 기록.

Q2. 신규 협력사가 경쟁사 단가표를 보여주며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면?

A. 수령·보관·복제 금지. 즉시 반환 또는 파기 요청하고, 내부 보고 후 독자 기준으로 재협의를.

Q3. 특가 프로모션을 업계 전반에 “시그널”로 알리고 싶은데?

A.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공표는 금지. 공식 마케팅 정책과 내부 승인 절차를 따른다.

9. 셀프 체크리스트(업무 착수 전 점검)

- 경쟁사와 민감정보(가격·원가·고객 등)를 공유하거나 받을 상황이 아닌가?
- 제안·응찰·계약 조건은 독자 판단과 증빙 가능 근거에 기반했는가?
- 협력사 선정·평가·대금 조건은 객관적 기준과 기록으로 설명 가능한가?
- 협회/회의 안건에 경쟁제한 소지가 없는가? 문제가 생기면 즉시 퇴장·기록 가능한가?

□ 민감거래는 사전 승인 받고 지출대장·증빙을 준비했는가?

10. 교육 및 문의

공정거래 관련 교육 일정, 교재, 상담 창구(준법/윤리경영 부서 내선)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. 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, 구체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.

제정/시행일: 2025. 09. 26

회사명: (주)유선인터내셔널

구분	작성	검토	승인
성명	남정숙	박경순	권현정
서명			